#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3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서영교·양정숙·오영훈

임호선 · 강민정 · 김영배

이해식 · 오영환 · 박 정

박상혁 • 박홍근 • 한병도

신정훈 · 임오경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 이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인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신혼부부와 서민, 무주택자 등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3제1항 등).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	②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	
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	
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취득세를 <u>2021년</u>	<u>2024</u>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년 12월 31일</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 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지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u>2024년 12월 31일</u>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략)

<u>2024년 1</u>
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